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26 | 2026.4.6. (2026.3.30.~2026.4.5.)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진입규제, 기술개발 지원, 조달·입찰, 업무절차 등 현장에서 공공기관 숨은규제 총 251건(참여기관 109개)을 합리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26~’30)」을 수립하고 국가표준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발표했습니다. 표준 선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핵심산업 분야에서 시장수요를 반영한 표준개발을 확대하고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산업통상부>는 글로벌 공급과잉, 통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금융위원회>는 「상법」개정에 따라 모든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년 내 원칙적으로 소각하고,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의 발행 등이 불가함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은행 대출금리 산정시 보증기관 출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비율을 정하고자 하는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밀히 차등화하고, 주주권 행사에 이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8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탈취 피해를 보다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4인)**」,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시 및 제3자 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9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및 총 임기 등을 규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이고, 3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8% 미만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은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사업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6인)**」,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감사위원 선임 방식을 강화하는 한편,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집중투표 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대형금융회사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주주총회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30인)**」,

출연받은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의 불산입 한도를 50%로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현행 7가지 방송광고 종류를 새로운 종류의 방송광고를 유연하게 포섭할 수 있는 3가지 방송광고 유형으로 단순화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회의원 등 15인)**」,

제약사가 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이와 관련된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본 프로그램의 시행에 있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희귀의약품 무상 제공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의원 등 10인)**」,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률뿐만 아니라 사업장 규모도 고려하여 가산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4인)**」,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가 유급병가급여 및 상병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5인)**」,

노동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의무화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참여시 국가가 최대 20% 이내에서 해당 발전사업의 지분을 획득할 수 있는 공유지분 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민병덕의원 등 18인)**」,

고객 개인정보 처리·보호 조치 위반으로 인한 대규모 유출 사고를 중대시민재해에 포함하고, 그 결과 대규모 피해를 유발한 경우 기업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4.6.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되어 있고, 4.10. 안건심의를 위한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재경위>, <과방위>, <행안위>, <문체위>, <산자위>, <기후노동위>, <국토위> 등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실시됩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발표(기획예산처) 8
-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발표(관계부처 합동)..... 9
- 「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발표(관계부처 합동) 10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 12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 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
-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해양수산부) 14
-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할용을 위한 법률(해양수산부) 14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4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15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산업통상부) 16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 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17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18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18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43인) 19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1인) 19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8인) 20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4인) 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9인) 2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 21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22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1인) 2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3인) 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6인)	23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30인)	2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24
•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황명선의의원 등 10인)	25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2인)	25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의원 등 10인)	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1인)	26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	26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27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	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2인)	27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6인)	28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5인)	28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29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의원 등 11인)	29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	29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의원 등 12인)	30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의원 등 10인)	30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의원 등 10인)	3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의원 등 14인)	31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의원 등 17인)	32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5인)	3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의원 등 14인)	33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의원·민병덕의원 등 18인)	33
•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의원·민병덕의원 등 19인)	3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3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9인)	35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의원 등 10인)	3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35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2인)	36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36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2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금융] 월간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
- [바이오/헬스케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 개편: 기회와 대응 전략
- [조세] Tax Intelligence 관세 특별호
- [바이오/헬스케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출범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3. 18. - 2026. 3. 31.)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발표

-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저소득·소상공인·청년 등 민생 안정 지원, 직접 타격을 받는 피해 기업·산업 지원 중점 투자

2026-03-31

정부는 3월 31일(화)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음.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과 기업·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하였다고 밝힘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26.2조원 규모로 ①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원, ②민생 안정 지원 2.8조원, ③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6조원, ④지방재정 보강 등 9.7조원, ⑤국채상환 1.0조원으로 구성된다. 중동전쟁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민생 안정과 피해기업·산업 지원에 더하여 금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신산업 전환 사업도 포함하였음



관계부처 합동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발표

- 민생경제 회복 위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251건 합리화 추진
- 공공기관의 진입규제, 기술개발 지원, 조달·입찰, 업무절차 등 4대 분야 숨은규제 251건 정비를 통해 기업현장 활력제고 기대

2026-04-03

정부는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을 발표하였음. 공공기관은 업무규정, 지침 등을 통해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소기업 등에게 실질적으로 규제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숨은규제)하고 있음

따라서,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공공기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생회복 부흥 관점에서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함께 기업애로를 야기하는 숨은규제를 발굴·합리화하고, 우수과제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가참여를 유도하였음. 그 결과, 진입규제, 기술개발 지원, 조달·입찰, 업무절차 등 현장에서 공공기관 숨은규제 총 251건(참여기관 109개)을 합리화하였다고 밝힘

< 4대 중점 추진과제 >

① 사업·입지 등 진입규제 합리화 (44건)

기관 고유사업, 법정 수탁사무(입지·지원 등) 관련 진입제한 요건 합리화

② 기술개발 부담경감 및 지원 확대 (39건)

시험·검사·인증 등 기술개발 수수료 경감, 중소기업 비용지원 확대

③ 조달방식 합리화 등 애로 해소 (123건)

계약조건 공정화, 등록·입찰·평가·납품·검수 등 조달 단계별 부담 개선

④ 기업관련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45건)

공공기관 승인 절차 등에 있어 서류제출 부담 경감 및 자율 강화

① 사업·입지 등 진입규제 합리화(44건)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 완화)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방출구 위치에 대한 제한규제 및 사업소 경계 거리 기준을 완화(한국가스안전공사)

(재도전 기업 발전 기자재 공급자 기회 확대) 기업의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발전 기자재 공급자 제도와 관련하여 공급자 자격심사시 ‘부도·화의’ 감점항목을 삭제(한국남부발전 등 6곳)

② 기술개발 부담경감 및 지원 확대(39건)

(물기업 시험·검사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물 산업 관련 시험·검사·측정·분석 수수료 감면 적용대상을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중소기업 40%, 중견기업 20% 감면)(한국환경공단)

(중소기업 AI 전환 비용지원 자체 시행) 공공기관 자체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업무 생산성 개선 등 인공지능 전환비용을 지원(인천국제공항공사등5곳)

③ 조달방식 합리화 등 애로 해소(123건)

(납품대금연동제 체결 지원) 조달계약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대상을 확대하고 산하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적극 실시하여 연동제를 확산(주식회사 에스알등7곳)

(물품 제조·구매 하자보수보증금률 인하) 조달청 기준과 같이 5%에서 3%로 인하(한국가스공사등6곳)

④ 기업관련 업무처리절차 간소화(45건)

(공공기관 입점기업 판매대금 지급기간 단축) 공공기관 입점기업의 대금 수취일 소요기간을 ‘정산마감일+10일 이후’에서 ‘정산마감일+2일 이후’로 단축((주)공영홈쇼핑 등 2곳)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출자지분 사전승인제 개선) 입주기업이 자사의 출자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현행 출자지분 5% 이상 변경에서 10% 이상 변경으로 완화(부산항만공사)

관계부처 합동

「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발표

- K-표준으로 AI 등 미래 핵심산업 견인
- M.AX 얼라이언스 분야 등 ‘30년까지 국제표준 1,900건 이상 개발

2026-03-31

정부는 '26~'30년간 국가표준 정책 방향을 담은 18개 부·처·청 합동 「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26~'30)」을 수립하고 국가표준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발표했음

표준 선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미래 핵심산업 분야에서 시장수요를 반영한 표준개발을 확대하고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K-표준으로 대한민국의 혁신성장 견인”을 목표로 하는 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은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폭 넓은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수립되었음. 동 계획은 ①미래 핵심산업 및 AI 기반·융합 표준 선도, ②국민체감 표준 인프라 확대, ③기술규제 대응 및 인증·인정 혁신, ④혁신적 표준 생태계 조성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표준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129개 실행과제를 담고 있음

① 미래 핵심산업 및 AI 기반·융합 표준 선도

-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미래차, 로봇 등 M.AX 얼라이언스 분야를 포함한 18대 미래 핵심산업 분야 국제표준 및 사실상표준을 집중 개발

- R&D-표준 연계를 통해 연구성과의 신속한 국제표준화를 지원
- 특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26.2월)에 따라 올해 중으로 ‘국가 AI 표준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AI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

② 국민체감 표준 인프라 확대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생활편의 등에 대한 표준 개발을 강화
- 배터리 내장 제품, 신종 어린이제품 등 제품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표준과 산업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 보건 표준 개발
-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표준을 비롯하여 공연장 설계, 목조 건축물 자재 성능 등 표준을 개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정량표시상품 관리제도’ 개선

③ 기술규제 대응 및 인증·인정 혁신

-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불필요한 국내 기술규제도 정비할 계획
- KS 인증제도 개편을 통해 공장심사가 없는 심사방식을 신설하여 첨단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
- 국내 시험인증산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의 시험능력 향상과 자율성 확대를 추진

④ 혁신적 표준 생태계 조성

- 국내 표준 전문가의 국제표준화기구(ISO/IEC/ITU) 임원직 수임을 확대하고, 美·獨 등 기술표준 강국과 양자 표준협력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전략적 표준외교를 강화
- 첨단 분야 표준대학원 과정 운영 등 석·박사급 표준인력 양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재정경제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4-03 시행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국내 반입·유통을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공급 등이 필요한 집중관리품목의 경우 추천기관이 해당 품목의 수량 할당을 받기 위한 대상자를 추천할 때 반출기관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이도록 하고, 수량 할당의 추천을 받은 자가 조건을 위반하여 추천기관이 그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보세구역 반입일 등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집중관리품목을 추가하는 한편,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항조치의 절차에 대해서는 보복관세의 부과절차 등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2026-04-03 시행
-------	-------------------------------------	---------------

「관세법」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석유화학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합병등기일 이후 사내 석유화학공정에서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여 발생한 주·부산물을 정유공정에 재사용하거나 비석유화학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부산물의 제조에 사용된 원유에 대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2026-10-01 시행 예정
-----------	------------------------------------	------------------

최근 주요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심각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의심 정황이 있어 이용자의 피해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바, 침해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 ①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보호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제45조제5항 신설)
- ② 중기업을 제외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에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 등을 추가함 (제4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4항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 신설)
- ③ 일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제45조의4 신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일정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수준을 평가하도록 함 (제45조의5 신설)
- ⑤ 생성·처리하는 정보의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으로 인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제47조의7제2항 신설)
-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일정한 침해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제48조의3제4항 신설)
- ⑦ 침해사고의 분석 대상을 침해사고 원인에서 침해사고 발생 여부까지 확대함 (제48조의4제1항)
- ⑧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와 반복적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표준안 마련 및 보급 의무를 부과하며,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를 강화함 (제48조의7부터 제48조의10까지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2026-10-01 시행 예정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보고·점검체계를 신설하며, 고의·중과실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사전승낙 철회 등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매뉴얼 마련 및 이용자 보호 조치 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2027-04-01 시행 예정

전 세계의 해운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을 목표로 국제 해운부문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액체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탄소중립의 취지에 어긋남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녹색해운항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외를 넘어선 더 다양한 층위에서의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통하여 항만과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해운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미래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2027-04-01 시행 예정

2009년 5월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국내법 제정을 통하여 반영함으로써 협약을 준수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4-03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 분양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64호, 2025. 12. 2. 공포, 2026. 4. 3.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허가권자, 분양사업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및 제출방법을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 분양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부동산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26-10-01 시행 예정

최근 가상자산 형태로 피해자금을 편취하거나 현금 형태의 피해자금을 도피시키는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인바,

이 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를 추가하며,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형태의 피해자산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등을 통한 피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환급되는 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해당 매도대금을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산업통상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2026.04.01. ~2026.05.11.

글로벌 공급과잉, 통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2025. 12. 16, 법률 제21202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실행계획 포함 내용 및 수립 절차 등 규정 (안 제2조~제3조)
- ② 철강산업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실시 방식과 통계 작성 범위, 관리 전문기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제5조)
- ③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재검토 및 지원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 규정 (안 제13조~제14조)
- ④ 저탄소철강 협력모델 선정 절차 및 지원 사업에 포함 내용 등 규정 (안 제20조~제22조)
- ⑤ 저탄소철강 인증기준, 인증 절차, 지원 사항 및 인증 취소 등 규정 (안 제23조~제29조)
- ⑥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정 취소 등 규정 (안 제38조~제40조)
- ⑦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기준 초과에 관한 규제 특례 대상 및 절차 규정 (안 제47조)
- ⑧ 기업결합 심사기간 세부사항, 공동행위 승인 절차, 사업재편 정보교환 방식 등 규정 (안 제48조~제50조)

※ 문의처 :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mailto:steel@kpa.go.kr) (전화: 044-203-4694)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3.30. ~2026.05.11.
----------	-----------------------------	-----------------------------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지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사단법인인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전환하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469호, 2026.3.17.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 ① “협회”를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변경 (안 제4조제9항제1호, 안 제12조제1항제1호, 안 제17조 안 제19조, 안 제20조제1항 개정)
- ② “협회”의 “연합회” 설립인가 관련 경과규정 신설 (안 부칙 제2조 신설)
- 「전기산업발전기본법」부칙 제2조에 따라 “협회”가 총회를 거쳐 “연합회” 설립을 신청하면, 순 제18조제1항에 따른 발기인의 정관작성 등은 간주하도록 규정할 필요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 (전화: 044-203-3895)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3.31.
~2026.05.11.

「상법」개정(3.6 시행)에 따라 모든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년 내 원칙적으로 소각하고,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의 발행 등이 불가함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자기주식을 규율하고 있는 법체계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의 운용방법 변경 (안 제106조제5항)
-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의 처분이 원천 불가하고, 신탁계약이 종료·해지되는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동 내용을 신탁계약의 운용방법의 하나로 추가하고, 신탁계약 운용방법 중 자기주식 처분을 전제로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 ②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관련 규정 삭제 (안 제176조의2제2항 및 제4항)
-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이 불가함에 따라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관련 규정을 삭제함
- ③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대상을 모든 상장회사로 변경 (안 제176조의2제6항)
- 개정 상법에 따라 모든 주식회사에게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작성 의무가 생기므로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하는 상장회사에게만 부과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의무도 모든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고자 함
- ④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구체화 (안 제176조의7제4항)
-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년 내 원칙적으로 소각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에 따라서만 처분이 가능하므로 관련된 내용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처분기간에도 적용하고자 함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화: 02-2100-2691, 팩스: 02-2100-2678)

금융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안2026.03.30.
~2026.05.1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이 개정(제21358호)됨에 따라 개정법률이 하위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하위 고시에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①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위를 구체화 (시행령안 제4조)

-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구체화

② 대주주 관련 신고사항 구체화 (시행령안 제10조의11, 규정한 제27조제2항·제4항)

- 대주주 관련 신고사항을 대주주의 실지명의, 주식보유현황으로 규정하고,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도 신고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에 추가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사항을 규정

③ 신고 불수리 요건을 구체화 (시행령안 제10조의12, 규정한 제27조제7항·제8항)

- 미충족시 신고불수리 사유가 되는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④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기준금액 폐지 (시행령안 제10조의10)

-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기준금액(100만원)을 폐지

⑤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경우 정보 수취 의무 규정 (시행령안 제10조의20제6호)

-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수취의무를 규정하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 \(전화: 02-2100-1738, 팩스: 02-2100-1738\)](tel:02-2100-1738)

금융위원회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4.03.
~2026.05.14.

은행 대출금리 산정시 보증기관 출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26.7.1일 시행 예정), 해당 비율을 정하고자 함

은행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신용보증기금

※ 문의처 : [금융위원회 은행과 \(전화: 02-2100-2982, 팩스: 02-2100-2948\)](tel:02-2100-2982)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43인)	2026-04-03 발의
국회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률안 심사와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는 구조임. 따라서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은 국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 그러나 최근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는 위원장의 자의적인 의사일정 운영으로 회의 개최가 지연되거나, 법률안 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민생과 직결된 입법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의 책임성과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회의 개최 요구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 회의를 개최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의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소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위원회 전반의 의사일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1조의2 신설 등)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1인)	2026-03-30 발의
최근 수많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국내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3년 1,277건에서 2024년 1,88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과거 해킹이 시스템 일부에 침입하는 단편적 불법행위였다면, 최근 발생하는 침해사고는 조직 전체를 마비시키고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진화하고 있어 철저한 보안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등의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사업자의 협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침해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침해사고에 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침해사고조사관’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이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침해사고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보안 취약점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5조제23호의3 및 제6조제20호의3 신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8인)

2026-04-02 발의

최근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상장회사, 특히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가 기업 경영을 견제하고 그 소수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질적으로 소수주주권의 행사가 매우 어려우므로,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행사요건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주주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의 이사 등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주주권 행사에 상장회사의 이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밀히 차등화하고, 주주권 행사에 이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542조의6 및 제635조)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4인)

2026-03-30 발의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탈취·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원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원사업자가 재판에 이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그 피해를 입증하고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임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구조적 입증 한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Inspection) 및 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신문 제도 등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취지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최근 개정된 바 있음

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이 법에 반영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탈취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 ①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정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함 (안 제35조의7, 제35조의8 신설)
- ②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자료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안 제35조의10 신설)
- ③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관련 사실의 증명이나 손해액 관련 사실의 자료검증에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5조의11 신설)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9인)

2026-03-30 발의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임.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일환으로 해외에서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에 맞춰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화하고 도입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공시 도입 시점이 주요 경쟁국들보다 뒤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단계적 확대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임. 이로 인한 정보 투명성 부족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속시키고,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녹색 자본의 유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는 거래소 공시로 운영할 예정임. 이는 법정공시 형태로 운영되는 주요 경쟁국가들과 큰 차이가 있음. 게다가 거래소 공시 방식은 법적 구속력이 미흡하여 국제 기관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움. 특히, 제도 정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시 오류에 대해 거래소 내부 제재만 면제될 뿐 민·형사상 책임은 그대로 남아 오히려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시 및 제3자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기업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단계화하며,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고 도입 초기 2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고의가 아닌 경우 민사상 책임과 과징금을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자본시장의 ‘코리아 프리미엄’의 기반을 굳건히 하고자 함

정무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2026-03-31 발의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임기나 연임 횟수에 관하여는 「상법」상 이사 임기 규정 외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예외적 겸직 가능 사유 중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것은 직무 전념 및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반복적인 연임으로 인한 권한 집중이 금융회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및 총 임기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10조제2항 등)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2026-03-31 발의

현행법은 상품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규정하여 납품업자의 자금 회수 지연을 방지하고 거래상 지위 격차로 인한 불공정거래를 완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 판매대금을 월 마감 기준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티메프 사태, 홈플러스 정산 지연 논란, 쿠팡 관련 분쟁 등 일련의 사례에서 보듯이 유통시장 내 협상력 격차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납품업자는 대금 지급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거나 정산이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전자금 부담 증가와 경영 불안정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4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며,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매입 마감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납품업자에 대하여는 지급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자금 유통 필요성이 높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납품업자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8조)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1인)**

2026-03-31 발의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들에게 상품판매대금을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직매입거래 대금의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급기한이 통상적인 대금 지급 기간에 비해 장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일부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법정기한에 근접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을 4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함**으로써 납품업자의 대금 회수 기간을 단축해 자금 유동성 경직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감소하고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안 제8조)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3인)**

2026-03-31 발의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판매광고나 상품 정보제공에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생성형 AI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거나 변조된 허위 후기를 활용한 과장 광고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상품의 표시·광고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규율을 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변조된 허위의 소비자 사용후기를 표시·광고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소비자의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 (안 제21조제1항, 제45조제3항)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6인)**

2026-04-01 발의

최근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그러나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 또는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일부 기업들이 여전히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주식시장에서 주주이익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이고, 3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8% 미만**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은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사업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161조의2 신설 등)

정무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30인)

2026-04-02 발의

금융회사는 자본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공공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일반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최근 「상법」개정을 통해 강화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와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상법」개정을 통해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 배제를 금지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으나,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율에는 이러한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 또한 금융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주제안 독립이사 후보에 대한 보호 장치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율에 「상법」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감사위원 선임 방식을 강화하는 한편,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집중투표 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대형금융회사(대형금융회사는 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름. 이하 같음)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주주총회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아울러 **대형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로 구성되는 주주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에 주주 참여를 보장하고 금융회사 이사회와 주주 간의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재정경제기획
위원회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
인)

2026-04-01 발의

현행법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에 대해서는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정하여 두고 그 한도 또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이와 같이 낮은 수준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규정은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 출연 등 기부 활성화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산·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의 불산입 한도를 50%로 확대함으로써,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시민사회가 상생하는 공익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안 제16조 제2항제2호가목 등)**

국방위원회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황명선의의원 등 10인)

2026-03-31 발의

국방전력정책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정책의 핵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등에 정책추진절차·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어 그 중요성에 걸맞은 적절한 규범체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본질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또한, 국방 분야의 법률 중 국방전력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기본법은 부재하여 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방전력정책의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고 국방전력체계의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정하여 국방전력정책의 지속성·일관성·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과학기술에 기반한 선진강군의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2인)

2026-03-31 발의

최근 러·우 전쟁 장기화, 수출통제 강화 및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등으로 무기체계 소재·부품 공급망 교란 요인이 빈번하게 발생함. 공급망 위기에 대한 영향성 파악을 위하여 단종, 납기 지연 등 수급 애로 상황을 통합적으로 조사·분석·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경제성이 희박하여 국산화가 어려운 품목 등은 정부비축을 통한 공급망 위기 대응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 소재·부품 공급망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방산원자재를 비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비축원자재 대부대상이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수출통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반업체에 대한 비축원자재 대부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조사·분석·관리 및 정부비축제도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기체계 공급망 조사·분석, 공급망 안정화 정책 수립 등을 통하여 공급망 위기에 적시 대응하고자 함

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의원 등 10인)

2026-03-31 발의

현행법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이로 인해 내·외국인 출입이 모두 가능한 카지노뿐만 아니라 내국인출입이 금지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없어 외국인 유치 및 관광 산업의 진흥 측면에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없는 카지노업은 내·외국인 출입이 모두 가능한 카지노로 한정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허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5조제1항제3호)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1인)

2026-03-30 발의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소속 공무원 또는 민·관합동조사단으로 하여금 사업장 출입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발생의 빈도가 늘고, 해킹 수단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침해사고의 기술적 특수성에 대응할 전문기관 인력의 체계적 활용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침해사고조사관을 지정하고, 침해사고조사원을 위촉하여 침해사고조사관을 지원하도록 하며,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자료제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 대응 체계를 갖추려는 것임 (안 제48조의7 및 제48조의8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

2026-03-31 발의

현행법은 데이터의 수집·가공·분석·유통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그간 공공 및 민간에서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어 왔으나, 플랫폼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데이터의 소재 정보가 분산되어 필요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탐색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데이터 소재 정보 등에 대한 표준화 체계가 미흡하여 인공지능 학습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음

현행 규정만으로는 데이터 소재정보를 통합 데이터 플랫폼에 연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플랫폼의 참여를 유도할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인공지능 학습 및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하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유통·활용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데이터 플랫폼 간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법인 등에 대하여 통합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의 탐색·연계를 촉진하고 인공지능 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9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2026-03-31 발의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와 글로벌 OTT 서비스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국내 방송광고 시장의 침체가 구조화·장기화되고 있음. 방송광고 종류를 세분화해 경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제 방식으로는 신유형 방송광고의 신속한 도입과 활용이 곤란해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

이에 방송광고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의 7가지의 방송광고 종류를 새로운 종류의 방송광고를 유연하게 포섭할 수 있는 3가지 방송광고 유형으로 단순화**해 신유형 방송광고 도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안 제73조제1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

2026-03-31 발의

현행법은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수집·활용 및 관련 시책 등을 규정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정부 예산으로 수행되는 사업 과정에서 구축·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가 개별 기관 내부에 분산 보관되거나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에 대한 현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현행 규정만으로는 정부사업 수행기관 등이 산출한 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제공토록 하는 법적 의무나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데이터 공급 체계의 효율성이 낮은 상황임

이에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하고 국가기관등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협력 요청 및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체계적 공급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의2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2인)

2026-04-02 발의

현행법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킹 등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관련 정보에 대한 기업과 정부 간의 정보 공유 뿐만 아니라 기업 간 공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정보 공유체계를 법률에 명시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침해사고정보 공유체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도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의2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6인)

2026-04-02 발의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방송광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기술 발전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제작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청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제작 또는 편성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실제와 혼동할 우려가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에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시청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73조의3 및 제108조제1항제10호의5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5인)

2026-04-02 발의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방송프로그램 구성·운용 및 광고에 관하여 「방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분야에서도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제작 또는 편성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실제와 혼동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의2 및 제28조제1항제4호의3 신설)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2026-03-30 발의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게임업체 내부 직원들이 게임 아이템을 부정하게 생성하거나 게임의 프로그램 운영 정보를 유출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관련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수행 시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누구든지 게임운영정보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2호의2,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신설 등)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의원 등 11인)

2026-03-31 발의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에 따라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친화적 선박에 탑재되는 선박 기자재의 국산화율은 약 60%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에서는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여 기자재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385억 원을 투입하였음

이에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대형조선소, 중소형조선소, 선박기자재업체가 상생하는 환경친화적 선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2조제4호 및 제11조의2 신설)

보건복지위원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2026-03-30 발의

최근 인체에서 유래된 다양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의 연구 및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환자 치료연구 성과가 도출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세포치료연구에 대하여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인간배아줄기세포와 같이 이미 수립되어 실시기관에 공급되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환자치료 연구승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첨단의료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환자에 대한 치료 기회 확대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군에 따라 환자치료 실시기관을 한정하고 있어 법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사항의 일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하고 환자치료 실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2제2항, 제15조제3항 단서 및 제28조제2항제4호 신설)**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2인)

2026-03-31 발의

최근 졸음, 어지럼증 등을 유발하는 의약품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의약품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환자가 해당 의약품이 운전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감기약,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졸음·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용지도나 의약품의 포장·용기에서 이에 대한 주의가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있음

이에 **약사가 사용 또는 복용 시 졸음·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을 조제하고 이에 대하여 복용지도를 하는 때에는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해당 의약품을 사용 또는 복용하고 자동차·기계 등을 운전·조작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의약품을 사용 또는 복용하고 자동차·기계 등을 운전·조작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사용 또는 복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경감하려는 것임 (안 제24조, 제56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제3호의3)**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2026-03-31 발의

의약품은 제약사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보험약가를 부여받기 위하여 약가신청 및 협상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제약사는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높은 가격의 희귀의약품에 대하여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이를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다만, 환자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가 현행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환자지원 프로그램의 적용에 관한 제약사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제약사가 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이와 관련된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본 프로그램의 시행에 있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희귀의약품 무상 제공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환자들이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보다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86조의9 신설 및 제92조)**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

2026-03-30 발의

현행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수입 또는 제조 등과 관련된 법률 위반 행위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위반 행위에 따라 10년 이하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각각 10년 또는 7년임. 그런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사상의 경우에 그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현행 공소시효 기간 내에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역학조사 및 독성연구 결과 등 현행법 위반 행위가 사상의 원인임을 규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함으로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2 및 제57조의2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4인)

2026-03-30 발의

현행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률 3.1%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기업이 고용하는 것이 고용하지 않는 것보다 이익이 되지 않아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을 하려 한다는 입법의 취지를 달성하기가 어려우므로 부담기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뿐만 아니라 사업장 규모가 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차등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률뿐만 아니라 사업장 규모도 고려하여 가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33조제3항)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7인)

2026-03-30 발의

현행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규모 분산자원의 활용과 지역 내 전력 자급을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의 거래 주체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 한정되어 있어, AI 데이터센터·대규모 산업단지 등 막대한 전력수요를 발생시키는 시설이 특화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소규모 분산자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발전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전력수급 안정성 높이고자 함 (안 제43조의2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5인)

2026-03-30 발의

현행법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에 대한 유급병가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노동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여도 소득상실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나아가 소득상실을 우려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침으로서 부상이나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가 유급병가급여 및 상병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4인)

2026-03-31 발의

현행법은 노동조합 임원의 선거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항은 조합원이 직접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또한,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투표에 의하는 경우를 대의원의 투표로 갈음하게 되므로, 대의원 선거 역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는 현행 방식은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외부의 감시 없이 사내에서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 상위 직책자의 개입이나 투표 유도 등 부정 선거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동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임 (안 제17조제4항·제5항 및 제23조제3항·제4항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민병덕의원 등 18인)

2026-03-31 발의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속도감 있는 전환에 해상풍력발전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해상풍력 발전사업 육성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으로서 현행법이 제정되었음. 현행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계획입지의 마련, 인허가 편의, 기술·금융·세제 혜택,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경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공적 자원의 크기에 비해 공공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하고, 특히 풍력, 공유수면 등이 공유부 성격을 지님에도 국민과 주민의 직접적인 이익공유 방식은 도입되지 아니함. 또 주요국들이 해상풍력발전을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 해상풍력발전은 가치사슬 전체에서 민간 및 해외 사업자가 산업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참여시 국가가 최대 20% 이내에서 해당 발전사업의 지분을 획득할 수 있는 공유지분 규정을 도입하여, 공유지분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국민 및 주민들이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현행법의 우대 규정을 구체화하여 에너지 공공성을 제고하려고 함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의원·민병덕의원 등 19인)

2026-03-31 발의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함에 있어 해상풍력발전이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해상풍력 발전사업 및 발전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규정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3월 시행되었음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계획입지의 제공, 인허가 편의, 기술·금융·세제 혜택,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우대 등 다양한 수준의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공적 자원의 크기에 비해 공공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하고, 특히 풍력, 공유수면 등이 공유부 성격을 지님에도 국민의 직접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도입되지 아니함

이에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사업 참여의 조건으로 해당 해상풍력발전사업의 20% 이내 사업지분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개정안에 맞춰 공유지분 수익의 이익공유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로서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2026-04-02 발의

현행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SK텔레콤, 쿠팡 등 대규모 데이터 보유 기업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경제적 피해 등이 급증하고 있으나 디지털 환경에서의 국민 안전 위협, 즉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전 국민이 통신·플랫폼 등 온라인 기반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현실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예훼손·경제 피해·2차 범죄 등은 심각한 시민재해임에도, 기업의 책임 강화 장치가 미흡해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객 개인정보 처리·보호 조치 위반으로 인한 대규모 유출 사고를 중대시민재해에 포함하고, 그 결과 대규모 피해를 유발한 경우 기업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안전·보안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안 제2조)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9인)

2026-04-03 발의

최근 임금체불 규모는 2024년 기준 2조원을 초과하였고, 최근 10여년간 누적 15조6천억원에 달하는 등 구조적·상시적 문제로 고착되고 있음. 특히 건설업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 전체 임금체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는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철도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임금체불을 실질적으로 방지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임금 직접지급 원칙의 특례를 도입하여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지급 범위 내에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의 하도급 구조에서 반복되는 임금체불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44조의3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2026-03-30 발의

현행법은 분당, 일산,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각종 특례 규정 등을 마련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과 달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정비속도가 부진한 상황인데, 이들 노후계획도시 지역 내 인프라가 가장 우수한 핵심 거점지역으로 정비가 지연될 경우 지역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 비수도권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비수도권 지역 내 정비사업에 대하여 용적률 및 세대수 상한을 추가로 완화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제2항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2026-03-30 발의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는 양도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가 인정되고 있음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의 경우 양도 제한 시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후인데 비하여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이로 인한 거래의 위축 및 가격 왜곡은 정비사업 추진을 지연하고 이동권과 재산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또한 조합원 자격 승계 제한에 대한 예외 조건이 양도인의 조건에만 의존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자의 입장에서는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찾아야만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기에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희소성이 높아져 해당 물건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가 줄어들고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양도 제한 시점을 재개발사업과 같이 관리처분계획 이후로 변경하고,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자격 승계를 허용하는 양수인의 예외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39조제2항)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2인)

2026-04-02 발의

건설현장에서는 다단계하도급 구조가 고착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발주자가 책정한 노무비가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치며 중간에서 삭감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건설노동자가 수행한 노동의 가치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임금삭감·임금체불 등 노동조건 악화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구조는 건설노동자의 생계 불안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숙련 기능인력의 이탈과 건설산업 전반의 품질 저하 및 안전 저해로 이어질 우려가 큼

이에 **건설근로자에게 직종별·기능별로 적정하게 산정된 단위 임금수준 이상의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 임금제를 도입하고, 도급계약 단계에서부터 노무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여 도급 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거나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간착취를 방지하여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2026-04-03 발의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을 의무화하여 임금 및 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공사 외의 민간 건설공사 영역에서는 여전히 대금 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에 대한 대금 체불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공공기관이 과반 이상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공공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더불어 하도급 보호 의무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함으로써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4/6(월) 14:00	- 대정부질문(경제 분야)
	4/10(금) 14:00	- 안건 심의

2.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재경위	예결산소위	4/6(월) 10:00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체회의	4/6(월) 17:00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과방위	전체회의	4/6(월) 10:00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국방위	법안소위	4/9(목) 14:00	- 법안 심사
행안위	예결산소위	4/6(월) 10:00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문체위	전체회의	4/6(월) 14:30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산자위	전체회의	4/6(월) 14:30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예결산소위	4/7(화) 10:00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체회의	4/7(화) 16:00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기후노동위	예결산소위	4/6(월) 10:00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체회의	4/7(화) 09:00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국토위	예결산소위	4/6(월) 10:00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체회의	4/7(화) 10:00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4/6(월) 10:00	중단된 제4인터넷뱅크, 재추진 필요한가?	신장식·민병덕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4/7(화) 14:00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위한 과제	민병덕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4/7(화) 14:00	해상풍력지원선(CTV) 국산화 기술개발 및 표준화 전략 토론회	오세희·박지원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4/8(수) 10:00	콘텐츠산업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손솔 의원실 등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4/8(수) 14:00	디지털서비스법 DSA의 균형모델과 한국형 입법의 실천적 과제: 한국-EU 전문가 포럼	이주희·김우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4/8(수) 14:00	제8차 자원순환정책포럼 - “이재명 정부의 K-GX 전략 : GR 산업을 중심으로”	장철민·박홍배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4/9(목) 15:00	산업안전규제,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	김형동·김재섭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4/8(수)	「금주의 서평」제2026-13호(통권 제772호) 발간	국회도서관	
	4/9(목)	「금주의 World Law」제2026-13호(통권 제13호) 발간		
	4/9(목)	「금주의 보고서」제2026-12호(통권 제44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2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3/31(화)	「최신외국입법정보」제2026-5호(통권 제293호)	국회도서관	
	4/1(수)	「금주의 서평」제2026-12호(통권 제771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3/30(월)	금융	월간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
3/31(화)	바이오/헬스케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 개편: 기회와 대응 전략
3/31(화)	조세	Tax Intelligence 관세 특별호
4/1(수)	바이오/헬스케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출범
4/3(금)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3. 18. - 2026. 3. 31.)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